

<p>據條例를 市 條例로 마련해 주셔서 清掃行政의 대혁신이라 할 쓰레기 從量制가 현재 施行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오늘 上程되는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현재 市長이 管掌하고 있던 建築物廢材類 및 多量 排出 一般廢棄物의 收集·運搬業에 관한 許可權을 廢棄物管理法上 취일선 清掃業務 管理者인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清掃業務 管理와 許可權을 一元化함으로써 建築物廢材類 등의 收集·運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指導·監督權이 효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른 한편 不法으로 收集·運搬되는 事例에 대해서는 地域 管轄區 廳長이 실질적인 團束權을 行使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p> <p>금번 條例改正의 主要內容은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 第12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市長의 建築物廢材類 등 收集·運搬業 許可權內容을 削除하는 동시에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 第5條의 規定에 의거 一般廢棄物의 收集·運搬業 許可權이 區廳長에게 이미 委任되어 있으므로 建築物廢材類 收集·運搬業에 대한 許可權도 이 條例를 적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p> <p>기타 條例上 內容은 營業區域은 서울시 全地域으로 하고, 中間 集荷場 등 許可要件을 施行規則에서 정할 수 있도록 根據를 條例에 補充하였습니다.</p> <p>本 條例 改正案이 금번 會期 中 議決되어서 建築物廢材類 등 一般 廢棄物 收集·運搬業의 許可와 指導·監督이 一元化되어 清掃行政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提案說明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委員長代理 權赫柱 수고하셨습니다.</p> <p>이어서 專門委員께서는 檢討報告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專門委員 李贊穆 專門委員 李贊穆입니다.</p> <p>.....</p> <p>(報告)</p>	<p>1995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폐재류와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이 서울시장의 허가사항으로 된 것을, ○자치구의 권한으로 위임하여 허가와 관리를 일원화 하고 중간집하장 확보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p>2. 주요골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폐재류 등 수집·운반 허가권한 변경에 수반되는 허가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구역은 서울특별시 전 지역으로 하고 허가권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 -허가 구청장은 허가내용을 다른 자치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현재 시행 중인 중간집하장을 확보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p>3. 관련근거 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제3항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p>4. 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조례안 제12조에서 일반폐기물의 종류를 6종류(별첨 참고자료 참조)로 분류된 것을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94.3.15.)에서 일반폐기물 전 종류에 대하여 수집·운반업 허가권이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일반폐기물 중 건축물폐재류와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업무는 자치구의 청소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잠정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일반폐기물의 청소업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나, 허가권 일부를 시장이 행사하고 있으므로 청소의 관리와 허가업무가 2원화
---	--

<p>가 되어, 자치구청장에게 단속 의무만 지우고 행정처분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결과가 되어 업무가 비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p> <p>○따라서 등 개정조례안 제12조의 건축폐재류 등의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자치구로의 위임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서 이미 권한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문체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p> <p>○권한위임에 수반하여 개정조례안 제12조 제1항에서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서울특별시 전역으로 한 것은 건축물폐재류 등 폐기물은 어느 구 지역이든 공통적으로 배출되지만 수집·운반 허가요건이 되는 중간집하장은 1,650㎡(5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허가업소는 서울 변두리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폐기물의 무단투기방지를 위하여는 영업구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p> <p>○허가권이 위임됨으로서 청소관련 관리·단속·허가 및 행정처분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일원화되어 청소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폐기물 무단투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기능에도 부수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p> <p>.....</p> <p>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委員長代理 權赫柱 수고 많았습니다.</p> <p>이상으로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마치고 質疑答辯에 들어가겠습니다.</p> <p>그러면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李迎春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李迎春委員 李迎春委員입니다.</p> <p>한 가지만 묻겠습니다.</p> <p>물론 本部長님의 提案說明과 우리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도 잘 들었습니다. 內容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本部長님께서 한 가지 意見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이 條例改正案은 一般廢棄物에 있어서의 신속한 處理와 또 簡素化, 또 아울러서 市長</p>	<p>에서 區廳長으로 許可權, 여러 가지 處理委任權이 넘어감을 통해서 中間集荷場의 確保에 있어서도 圓滑化를 기할 수 있다는 內容아닙니까? 그런 內容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슨 코멘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清掃事業本部長 金東勳 지금 管內에 있는 쓰레기의 處理責任者는 우리 現行法의 體系上 분명히 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特別市의 區가 地方自治團體가 아닐 경우에는 清掃 責任者가 서울市長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땅히 서울에서 許可權, 指導·監督權을 運營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의 區가 地方自治團體기 때문에 바로 區廳이 清掃에 대한 責任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p> <p>그래서 이것을 현재까지 저희들 本部에서 이것을 許可權을 行使하다 보니까 일단 許可나간 다음에 許可業體에 대한 事後管理가 안 됩니다.</p> <p>그래서 이것이 區廳長에게 넘어가야만 許可權者인 區廳長이 許可하고, 그리고 事後管理가 원활히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判斷해서 했고,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 清掃事業本부가 許可權을 관장할 때보다 業體가 너무 난립되어 가지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事例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分析해 본 結果 許可要件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區廳에 대한 평소의 清掃業務 指導·監督만 잘 하면 許可業體가 난립될 우려는 없겠다 이렇게 判斷을 했습니다. 그래서 區廳長에게 委任토록 決定을 한 것입니다.</p> <p>○委員長代理 權赫柱 다음.....</p> <p>(「없어요」하는 委員 있음)</p> <p>質疑하실 委員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質疑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p> <p>그러면 서울特別市一般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	--